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중에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 중 “2기 이상 묘의 형태로”를 “2기 이상 묘의 형태 또는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① ----- ----- ----- ----- -----.
1.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같은 합동묘역에 <u>2기 이상 묘의 형태로</u> 안장되어 있는지 여부	1. ----- ----- ----- ----- <u>2기 이상 묘의 형태 또는 1기의 묘에 2위 이상</u> 이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